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460
----------	-----

제출년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전 긴급히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3,28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6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68백만원이 증액된 518,99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28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968백만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2,968백만원이며,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